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 (제2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 위반
가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1호			
1)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		500	700	1,000
나)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	500	700	1,000	
2)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		100	200	300

<p>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경우</p> <p>3)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,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</p>		200	300	500
<p>나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·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</p> <p>3)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37조제1항제1호	500	700	1,000
<p>다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, 조업중지,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사고발생 원인,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</p> <p>3)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37조제1항제2호	500	700	1,000
<p>라.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37조제1항제2호	200	300	500
<p>마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</p>	법 제37조제1항제3호			

1)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500	700	1,000
2)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3)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500	700	1,000
4)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500	700	1,000
바. 삭제 <2017. 3. 27.>				
사.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제2호			
1)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2)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00	100	100
3)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00	100	100
4)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		100	200	300
아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·자료제출을 한 경우	법 제37조제3항	100	100	100
자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	법 제37	100	100	100

출입 · 시료채취 · 검사를 거부 ·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조제3항			
---	------	--	--	--